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 특허청·수원지법·지식재산보호원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중앙지법('23. 1월)에 이어 수원지법('24. 1월)으로 연계 확대 -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건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12. 1.(금)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1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사건이 집중되는 6대 지방법원* 중 가장 사건이 많은 2개 법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 '16년 특허권등 소송의 관할집중 시행으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신품종보호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지방법원으로 집중

수원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평균 처리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3%('19~'23.11)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23년 11월 기준 145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약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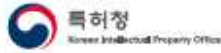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2. 법원-조정 연계제도 처리 절차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042-481-8227)





“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
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란?

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 신청 분야

- 
 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 
 직무발명
 관련 분쟁
- 
 영업비밀
 관련 분쟁
-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

- 
 신속한 분쟁해결
(3개월 이내)
-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
- 
 절차 비공개
(비밀 보장)
- 
 전문가의 안전한
 분쟁해결 지원

❧ 신청 자격

-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사용권자
- 
 직무발명자
 영업비밀 보유자
-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
-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kopia.re.kr/adr
 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T1670-9779 F 02-553-5865 E-mail ip.adr@korea.kr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



1] 조정 회부(수원지법)

-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조정 회부 결정

2] 조정사건 연계(수원지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건 특성 및 당사자를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
- 수원지방법원에서 분쟁 당사자 간 제출자료 및 사건 기록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로 송부

3] 조정 진행(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사건을 접수하고, 조정위원 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3인 이내 조정부를 구성
- 조정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조정결과 송부

4] 조정사건 종료(수원지방법원)

- (합의 성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후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합의 불성립) 소송 절차 진행